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상호 존중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2. 14.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2년 1월 24일

나. 발 의 자: 고기판, 오현숙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2022년 2월 4일

라. 상정일자: 제2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2022. 2. 1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오현숙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속하는 공무원의 상호 존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상호 존중”등 용어 정의 (안 제1조~제2조)
- 영등포구 구민과 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도록 하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사항 (안 제3조~제4조)
- 구체적인 상호 존중 행위 (안 제5조)
- 상호 존중의 날 지정 및 지원사항 (안 제6조~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옥연)

- 본 조례안은
 - 영등포구 구민과 영등포구 공무원이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존중하여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상호 존중”이란 “서로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에 대하여 함부로 하지 않고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적정범위를 넘어 일방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지 않으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귀하게 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음.
 -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한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공간적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임.
 - 안 제3조와 제4조의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책무조항에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상호 존중하고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

- 안 제5조는 상호 존중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함.
- 안 제6조에서는 매년 11월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지정하고 상호 존중 문화를 위해 캠페인, 공모전, 설문조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존중배려 문화를 홍보할 수 있음.
숫자 11은 1=1을 상징하며, 상호 대등한 인격체로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을 실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 안 제7조에서는 상호 존중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
- 다만, 본 조례안에서는 상호 존중과 관련한 세부 시책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구청장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 보다는 상호 존중에 대한 주의 환기 등을 위한 ‘선언적 의미’가 크다고 보임.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민과 영등포구 공무원이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적합한 조례안이라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상호 존중 조례안

(고기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47
----------	-----

발의년월일: 2022년 1월 일

발의자: 고기관, 오현숙 의원 외 5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속하는 공무원의 상호 존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영등포 구민과 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도록 하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사항(안 제3조~제4조)

다. 구체적인 상호 존중 행위(안 제5조)

라. 상호 존중의 날 지정 및 지원 사항(안 제6조~제7조)

3. 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2. 1. 20. ~ 1. 25.)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상호 존중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속하는 공무원의 상호 존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호 존중”이란 서로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에 대해 함부로 하지 않고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적정범위를 넘어 일방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지 않으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귀하게 대하는 것을 말한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영등포구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정무직을 포함한 영등포구청과 영등포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과 공무원, 공무원과 공무원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구민 대 구민, 구민 대 공무원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하고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상호 존중 행위) 상호 존중 행위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행위
- ② 친절하게 응대하고 배려의 정신을 갖는 행위
- ③ 올바른 호칭과 공손한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 ④ 개인 사생활을 보장하는 행위
- ⑤ 우월적 지위와 권한 남용을 하지 않는 행위
- ⑥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 행위
- ⑦ 폭언 및 폭력을 하지 않는 행위
- ⑧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호 존중 행위

제6조(상호 존중의 날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매년 11월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지정한다.

② 상호 존중 문화를 위하여 캠페인, 공모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상호 존중의 척도를 알기 위해 구민과 공무원을 상대로 설문조사 등을 할 수 있다.
- ④ 상호 존중 문화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 ⑤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존중배려 문화를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구청장은 상호 존중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